공고 2018-2

2019년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
공모배분사업(국내) 공고

(재)천주교대전교구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는 작은 나눔의 실천으로 국내·외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고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.

2019년 국내공모배분사업에 본당과 사회복지기관, 단체 및 기타 공익활동 증진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2018. 9. 6.
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

1 개 요

1. 공 모 명 : 2019년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공모배분사업(국내)
2. 신청기간 : 2018년 9월 17일 (월) ~ 2018년 10월 5일 (금) 18:00
3. 설 명 회 : 2018년 9월 18일 (화) 14:00 ~ 16:00
4. 결과발표 : 2018년 10월 19일 (금)
5. 워 크 숍 : 2018년 11월 5일 (월) ~ 11월 9일 (금) 중 택 1일
   ※워크숍은 최종 지원확정 된 기관을 대상으로 추후 연락예정이며, 해당기관은 참석 필수
6. 사업기간 : 2019년 1월 ~ 2019년 12월 (12개월)
7. 신청대상 : 사회복지 기관/단체, 본당, 및 기타기관
8. 모집분야 : 국내지원 배분공모사업
9. 지원금액 : 사업(프로그램) 별 최대 500만원

2 사업설명회 안내

1. 일　　시 : 2018년 9월 18일 (화) 14:00 ~ 16:00
2. 장　　소 :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2층 회의실(대전 동구 동산초교로 45번길 26-14, 홍도동)
3. 내　　용 : 한끼100원나눔운동 소개, 공모배분사업 안내, 신청서작성법, 예산편성방법 등
4. 교　　통 : 대중교통 적극권장(주차공간이 매우 협소)
   버스 - 512번(홍도지하차도 하차, 도보 3분)
   - 106번, 601번, 602번 607번(홍도치안센터 하차, 도보 5분)
   - 105번, 314번,711번(한남대정문 또는 대전신학대 하차, 도보 10분)

3 지원원칙

1.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공고된 기일, 접수방법 및 본부가 정한 신청양식에 맞게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2. 심사 후 본부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일부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, 이 경우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3. 동일기관에서 공모사업으로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음
4. 사업의 시행은 반드시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준해 실시되어야 함
5. 공모배분신청 시 사업별로 정한 지원한도액(최대 500만원)을 초과하여 신청 할 수 없으며, 사업계획상 스스로 정한 자부담 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
6. 모든 프로그램의 진행 기간은 1년 단위로 진행되어야 함
7. 일회성, 행사성 사업 및 기능보강, 단순 물품구매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은 지원제외
8. 국가/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, 받기로 확정된 사업은 지원제외
9.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또는 활동이 포함된 경우 신청할 수 없음
10. 수익(영리)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신청할 수 없음
11. 기타 본부 배분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 대상제외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은 지원제외 함

4 신청방법

1. 신청서 제출
 1)제출방법 : 전자우편(E-mail)으로 제출(우편, 방문접수 및 기타지원방법 불가)
  ※E-mail : hk100@hanmail.net
 2)접수마감 : 마감일 18:00까지 전자우편 등록완료분에 한하여 유효

3)제출서류

제출서류	비고	전자우편서류
신청공문	1부	※모든 서류(각 1부)를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바람
공모배분사업신청서(본부양식)	1부	
신청기관 고유번호증(시설인가증 등)	1부(해당기관만 제출)	

※신청서양식 다운로드 : 본부 홈페이지(http://100.djcaritas.or.kr) ⇒ 공지사항 ⇒ 2019년 공모배분사업 공고 첨부자료(공지 46번)

5 심사기준

1. 심사기준

분 류	상 세 기 준
신뢰성	예산의 구성내용, 투명성, 책무성 등
수행역량	사업에 대한 준비사항, 인력구성, 위협요인에 대한 대처방안 등
*지향성	신청단체 및 신청사업의 가치와 본부 가치의 부합정도
적합성	사업이 제안하는 변화 또는 발전내용의 사회적 적합성
기타	기타요소까지 모두 고려한 종합적 검토(정성평가)

※본부의 공모사업 지향성

1)인권에 기반 한 삶의 질 향상과 권리옹호 및 증진

2)지역사회주민(당사자)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환경변화에 대한 주도적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함

3)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한 시범사업(창의성)

4)가톨릭사회교리의 공동선과 연대성, 보조성을 기반으로 사람(인권) 중심의 발달기여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

6 기타사항

1. 본부는 사업진행의 점검 및 발전방안에 대한 협력을 위해 사업진행 중 중간방문을 할 수 있음

2. 협력단체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본부가 지원(배분)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
 1)공모배분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홍보물
 2)공모배분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보고서 및 자료
※본부의 로고 등 식별부호는 본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

3. 회계(예산) 관련사항
 1)지원이 확정된 단체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함
 2)지원금은 당해 연도 1월 중 일시전액 지급 함(단, 본부모금재원의 과부족,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분할 또는 특정기간에 지급 할 수 있음
 3)사업진행 중 발생 된 예금이자의 경우 사업비에 포함하여 운영하며, 사업종료 후 남은 지원금 잔액은 본부에 반환하여야 함

4. 지원취소 또는 환수
 1)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임이 발견된 경우
 2)지원금을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 3)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
 4)기타 배분위원회가 지원취소 및 환수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판정한 경우

5. 결과보고서 제출
 1)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협력단체에서는 사업결과보고서를 본부에 제출하여야 함. 다만, 본부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지면 제출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
 2)본부는 제출된 사업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,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서류 제출 또는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
 3)사업결과보고서에는 프로그램 정산 및 회계정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 4)결과보고서 양식은 본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함

6. 기타 세부사업기준은 본부의 운영원칙 및 본부와 협력단체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